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침수방지사설 설치 지원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박 지 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30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7월 5일

3. 제안이유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침수방지시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기상청이 발표한 최근 10년간 자료에 의하면(2011년~2020년), 전국에서 침수피해와 관련이 있는 호우가 4,833건, 풍랑이 5,143건, 폭풍해일이 4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풍수해의 51.8%를 차지함.
- 충북도의 경우, 해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풍랑과 폭풍해일을 제외한 호우만 산정하더라도 침수피해가 전국 풍수해의 25.0%로 1/4에 달함.
- 따라서,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나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참 고

우리 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22.12.30	16.01.01	-	23.02.20	23.02.23	23.04.21	-	23.07.10
시·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23.04.11	-	-	23.07.07	23.03.30	22.12.26	23.05.10	23.06.07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풍수해는 폭풍우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재해형태로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그 피해정도가 심해지는 추세이므로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3조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5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역과 침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9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군, 자연재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그 밖의 조문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3. 7. 5. ~ 7.11.)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본 조례안은 총 1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풍수해로부터 충청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는 기상이변에 따라 국지성 폭우와 지역적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이 인정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